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4조의2 (청약의 철회)	세4조의2 (청약의 철회)	
① <u>일반금융소비자는</u>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	D <u>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</u>	_
법률」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<u>바에 따</u>		
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		
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		
<u>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</u> 않을 경우 청약 철회	<u>바에 따릅니다.</u>	カフムコ
에 대해 설명하고 <u>소비자</u> 의 의사를 확인하여	② <u>채무</u>	자구수정 <u>-</u>
처리합니다.	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	_
	--------- <u>채 무 지</u>	-
제4조의3 (위법계약 해지)	세4조의3 (위법계약 해지)	
① 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	① <u> </u>	<u>-</u>
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		
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		
습니다.		자구수정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6조 (담보)	 제6조 (담보)	
①~② (생략)	①~② (현행과 같음)	
1.~4. (생략)	1.~4. (현행과 같음)	
5.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	5 .	
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		
<u>법 제50조의11을</u>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		
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(제2항제5호에 따		
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	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의 방식	
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)	<u>을</u>	근거법 변경으로 수정
		[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
제7조 (연대보증인)	 제7조 (연대보증인)	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	금소법 시행에 따른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		
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.	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0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	

현행	개정(안)	비고
	는 바에 따라	
1. 개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	_< 삭제 >	
하나에 해당하는 자		
가.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		
<u>업자</u>		
나. 「주택법」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		
금융소비자가 공동주택 관련 이주비 또는		
중도금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		
관련 시공사		
2.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	_< 삭제 >	
하나에 해당하는 자		
<u>가. 대표이사</u>		
나. 무한책임사원		
다. 「상법」에 따른 최대주주		
라.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		금소법 개정에 따른
30(배우자·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		연대보증인 성립 가능
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)을 초과하		요건 반영
여 보유한 자		
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에 준하는		
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		
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	_ < 삭제 >	
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		
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		
<u>④</u> (생략)	③ (현행 ④와 같음)	항 올림

현행	개정(안)	비고
<u>⑤</u> (생략)	<u>④</u> (현행 ⑤와 같음)	
<u>⑥</u> (생략)	<u>⑤</u> (현행 ⑥과 같음)	
<u>⑦</u> (생략)	<u>⑥</u> (현행 ⑦과 같음)	
⑧ (생략)	⑦ (현행 ⑧과 같음)	
제8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	제8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	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	
1.~3. (생략)	1.~3. (현행과 같음)	
4.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	4.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	내용 일부 삭제
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	<u>나</u>	대중 철구 역세
<u>받거나,</u>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		
제10조의2(할부거래법상 철회·항변권 안내)	제10조의2(할부거래법상 철회・항변권 안내)	
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		
·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		
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		
련 서류(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		
다)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·항변권이 배제		
되는 경우를 <u>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</u> 에 따		근거법 변경으로 수정
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		
야 합니다.		

현행	개정(안)	비고
	<u>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</u>	
제13조 (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)	제13조 (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)	
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	①	
변제의무,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		
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, 금융회사에 대한		
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, 그 채무와		
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<u>채권과를</u> 그 채권		
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, 금융회사는		자구 수정
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.		, , , ,
TEO THE TOTHE TO MET TO		

현행	개정(안)	비고
	<u>채권을</u>	
제19조 (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)	제19조 (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)	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	
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	2	
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		
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		
니다.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		불공정약관 변경명령에
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		따른 약관변경
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. <u><단서 신설></u>		भित्त निर्धित

현행	개정(안)	비고
	다만,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	
	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	
	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	
	제25조 (약관·부속약관 변경)	
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	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	
자 할 경우,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	경우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	
에는 서면통지로써,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	지에 변경약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	
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, 이를 알려야 합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니다.<단서 신설>	약관이 변경된 직후 게시합니다.	
	1. 법령 개정, 제도 개선, 약관 변경권고(명	약관 변경 관련
	령)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	통지기한 및 방법
	2.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	변경(예외신설)
	3.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	
	<u>용되는 경우</u>	
	4.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	
	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	
< 신설 >	② 제1항의 약관변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	
	이 될 때에는,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	

현행	개정(안)	비고
	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(제1항의 단서에 해당	
	할 경우 약관 변경 직후) 서면, 전자우편	
	(E-MAIL),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	
	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	
② (생략)	③ (현행 2항 내용과 같음)	
③ (생략)	④ (현행 3항 내용과 같음)	